

해외직구 식물검역 대상품목 검역 안내문

1. 모든 씨앗(자스민 종자 등)의 수입 시 준수사항 안내

○ 씨앗은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해당됩니다.

- 식물검역대상물품*을 수입하는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.

* 식물검역대상물품: 씨앗(종자), 묘목(접수 및 삽수 포함), 구근, 곡물, 과일, 채소, 향신료, 한약재, 목재, 흙, 병해충 등

- 모든 씨앗류는 수출국 식물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(Phytosanitary Certificate) 원본을 첨부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.



<상품 광고 이미지>

2. 「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(관세청 고시)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라도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씨앗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.

○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경우 자진신고 또는 제보 안내

- 신고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(☎ 054-912-0616)

온라인 신고는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
< 위반 시 처분사항 >

- ☞ 국제 우편·택송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면서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(식물방역법 제48조)

* 단,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의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(식물방역법 제50조)